

DPDHL Group 공급업체 행동준칙

Deutsche Post DHL Group은 세계 유수의 물류 및 우편 커뮤니케이션 회사입니다. DPDHL Group은 다음의 두 가지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Deutsche Post는 유럽 유수의 우편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DHL은 국제 특송, 화물운송, 전자상거래, 공급망 관리의 종합적인 물류범위를 취급하는 세계 성장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 주주, 직원 및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있으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엄격한 윤리기준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모든 공급업체 즉, DPDHL Group의 회사 또는 사업부문과 거래하는 모든 회사들은 동일한 윤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DPDHL Group은 Group 내 회사 또는 사업부문과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공급업체 행동준칙을 작성했습니다.

법적 윤리적 기준

공급업체는 사업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각국의 법률과 관례에 따르며, UN GLOBAL COMPACT, UN 세계 인권 선언과 1998년 국제노동기구 기본원칙과 노동권리에 대한 선언의 원칙을 지지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인권과 공정 노동 관례

▪ 아동 노동

공급업체는 어떠한 국가나 관할권에서도 법적 노동 연령 미만의 아동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 최소 연령이 정의되지 않았다면, 최소 연령은 15세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근무자는 법적 요건(예: 근무시간 및 근무조건에 관한) 및 교육 또는 훈련에 관한 요건에 맞도록 작업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 강제 노동

공급업체는 어떠한 형태로도 강제적, 구속적 또는 비자발적 노동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노동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근무자는 자신의 신원서류(예: 여권, 노동허가서 또는 기타 개인 법적 서류)를 직접 보관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고용 프로세스 및 고용 기간 중에 근무자들이 취업 또는 합리적인 숙소 제공(해당될 경우)에 대해 수수료 또는 임의의 비용(예: 취업 브로커)을 지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필요 시 근무자와 관련된 모든 비용과 수수료(예: 라이선스 및 부담금)의 지불을 책임져야 합니다.

처벌, 심리적 또는 육체적 강제는 금지됩니다. 징계조치와 절차는 근무자에게 명확하게 정의되고 통보되어야 합니다.

▪ **보상 및 근무시간**

공급업체는 작업시간, 초과근무, 임금 및 혜택에 관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국내법과 업계 의무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근무자에게 시기 적절하게 지급하고 명확하게 지불 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징계수단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단체결사자유와 단체협상**

공급업체의 직원들은 위협이나 협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이나 직원단체에 자기 선택으로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적용 가능한 법에 의한 단체협상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 **다양성**

공급업체는 직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력 있는 작업 환경을 장려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법에서 보호하는 성, 인종, 종교, 연령, 장애, 성적 지향, 출신 국가 또는 기타 특징에 관하여 차별하거나 차별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보건 및 안전

당사는 공급업체가 사업에 적합한 작업보건 및 안전관리 방법을 적용하여 최고 수준의 직업보건 및 안전 기준을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공급업체는 적용 가능한 작업보건 및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건강에 유익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여 직원의 건강을 보존하고, 제 3자를 보호하며, 사고, 부상 및 작업관련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기적인 작업장 위험 평가와 적합한 위험통제 및 예방조치 이행이 포함됩니다. 직원들은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데이터 보호 및 정보 공개

공급업체는 특히 고객, 소비자, 직원 및 주주의 개인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보호 및 보호법 그리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개인데이터를 수집, 처리, 전송 및 사용할 때 모든 상기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타당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즉, 일반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뇌물 및 부패

공급업체는 모든 국가 및 국제 뇌물방지 규정과 부패방지 법률,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 업체는 공식 조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또는 사업 확보 또는 보존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려고 금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 할 수 없습니다.

무역규정

공급업체는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제재나 금수조치를 포함하여 모든 적용 가능한 무역 및 수입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금세탁 및 금융기록

공급업체는 자금세탁행위를 철폐하도록 고안된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국제법과 규정에 의거 모든 금융기록과 보고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정 경쟁

공급업체는 적용 가능한 경쟁 및 반 독점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해상충

이해상충은 개인이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개인적 이익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해상충 상황에는 혈연 또는 혼인관계, 파트너 십, 비즈니스 파트너 십 또는 투자가 포함됩니다. 공급업체는 DPDHL 직원과의 모든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환경

공급업체는 모든 적용 가능한 환경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에 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여 제거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사는 사업 파트너들이 납품하는 자체 제품과 서비스 전체적으로 DPDHL Group의 기후보호 목표를 지원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바랍니다(예: 기후보호에 대한 관련 데이터 제공). 이러한 점에서, 당사는 또한 공급업체들이 자체 운영에 있어서 기후보호를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권장합니다(예: 자체적인 기후보호 목표 수립 및 달성).

사업 계속성 계획

공급업체는 모든 사업 중단(예: 자연재해, 테러,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질병, 유행병, 감염병)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계획에는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영토 내에서 발생한 재해의 영향으로부터 직원과 환경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재해대비계획이 포함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대화

공급업체는 자체 공급업체들이 공급업체 행동준칙을 계약상 의무조항 이행의 일부로 준수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공급업체 행동준칙 준수

DPDHL Group은 합리적인 통보로 이 공급업체 행동준칙의 요건 준수를 확인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DPDHL Group은 공급업체가 윤리적 행동의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공급업체 행동준칙에 명시된 의무조항의 위반은 공급업체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합니다.